항 고 장

사 건 20 타경(타채, 타기) 호

항 고 인

주 소

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에서 20 . . .에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결정의 표시

항 고 취 지

(예시)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.

항 고 이 유

첨부서류 1.

2.

20 . . .

위 항고인 (날인 또는 서명)

(연락처 :)

지방법원 귀중

※ 주의

1.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집행법 제 15 조 제 3 항).
2.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130 조 제 3 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위 1 항의 항고이유서 또는 2 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(민사집행법 제 15 조 제 5 항, 제 130 조 제 4 항).